

**2022년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종합감사 결과
공개문**

2022. 7.



**농림축산식품부
감사관실**

I. 감사실시 개요

□ 감사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자체감사계획의 수립·실시) 및 제21조(실지감사)의 규정

□ 감사목적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주요 사업과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점검하여 문제점을 시정하고, 개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기관 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 확보

□ 감사기간 및 인원

- (기간) 2022. 2. 14. ~ 2022. 3. 4.
- (인원) 감사담당관 외 6명

□ 감사대상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감사범위

- 최근 3년간(2019~2021)의 기관 운영, 사업 추진 등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II. 감사결과

1	농식품경영체 투자유치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처분요구	통보(2)	조치기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투자운용본부)

- 2020~2021년 「농식품경영체 투자 전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농식품모태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지 않은 농식품경영체의 경우 농식품펀드 운용사가 참여하는 사업설명회(IR)에 연 1회에 한해 참여할 수 있으나,
 - 헬썸(주) 등 4개 농식품경영체는 같은 해 2회 사업설명회에 참여하였고, 농식품모태펀드 투자를 받은 (주)베지스타 등 2개 경영체는 위의 사업설명회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참여하였음
- 다만, 일반적인 사업설명회가 아닌 특수목적 펀드가 주관하는 사업설명회까지 포함하여 연 1회로 제한하는 것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음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

- ① 사업설명회(IR) 참여 지원 시 농식품경영체의 연간 수요, 특수목적펀드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경영체별 참여횟수 제한을 완화하는 등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시행 요구 (통보)
- ② 농식품경영체 투자유치 지원사업 추진 시 사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영체에 대하여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직원에 대한 교육 등 조치 요구 (통보)

2	농식품투자조합 운용사 선정 우대기준 적용 미흡		
처분요구	통보	조치기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투자운용본부)

○ 2019~2021년 농식품부의 농식품모태펀드 운용지침에 따르면 농식품투자조합 운용사 선정시 농업경영체(농업인 및 법인)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경우 우대(가점)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 농금원은 위와 같은 우대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농식품투자조합 운용사를 선정하였음

* 지난 12년간(2010~2021) 농식품투자계정 투자금액 총 8,960억 원 중 농업법인에 대한 투자금액 1,074억 원(12.0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

농식품투자조합 운용사 선정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식품모태펀드 운용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선정 우대조건을 준수하여 농식품모태펀드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사를 모집하는 등 관련업무를 추진토록 요구 (통보)

3	특수목적의 농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근거 마련 필요		
처분요구	권고	조치기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투자운용본부)

○ 농금원은 농식품부 농식품모태펀드 운용지침에 따라 농식품산업 전반에 걸쳐 투자하는 '일반펀드'보다 정부 정책달성과 공공성 강화 등을 위한 '특수목적펀드'에 투자비중을 확대하고 있음

- 특수목적 '창업보육펀드'(사업초기 농식품경영체 발굴.보육)와 '세컨더리펀드'(타 펀드 출자.지분 인수로 투자 선순환 구조 마련)를 2021년 새롭게 도입
- 모태펀드를 특수목적펀드에 출자할 경우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성하는 농식품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 2021년도 '창업보육펀드'와 '세컨더리펀드' 운용사 선정 시 농식품투자조합이 출자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여 부득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기업 등 타 법에 근거한 투자조합을 선정함
- 그런데, 타 법에 근거한 투자조합이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부처에 관련내용 통보에 그칠 수밖에 없는 등 선량한 관리에 제약이 예상됨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이 특수목적펀드를 결성, 운용하는데 제한을 받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출자근거 마련 등 합리적인 개선 요구 (권고)

4	계약업무 추진 부적정		
처분요구	개선, 통보(2)	조치기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투자운용본부)

- 농금원은 농식품기업의 투자자금 조달을 위해 농식품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수행을 위한 위탁 용역업체를 선정하면서,
 - 「계약규정」에 제안서 평가 방법을 정하지 않은 채 제안서(기술평가) 점수 산출을 평가위원 평가점수의 평균으로 결정하겠다고 공고에 명시하였으나, 공고와 달리 평가위원의 최고점·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으로 제안서 점수를 산출하였음
- 또한, 「국가계약법」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 평가 종료 후 위원별·항목별 평가점수를 공개하여야 하나,
 - 농식품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사업 위탁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9건의 제안서 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음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

- ① 「국가계약법」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 평가점수 산출 기준을 「계약규정」에 명확히 하도록 조치 요구 (개선)
- ② 제안서 평가 방법 등을 공고한 경우 공고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직원에 대한 교육 등 조치 요구 (통보)
- ③ 협상에 의한 계약을 위한 제안서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관련 직원에 대한 교육 등 조치 요구 (통보)

5	농식품 모태펀드 운용 관련 지침 미흡		
처분요구	개선(2)	조치기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투자심사부, 리스크관리부)

- 농금원은 「농식품투자모태조합 투자관리지침」에 따라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자산을 농식품경영체에 투자할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하 “자펀드”라 함)을 결성하기 위해 업무집행조합원(운용사) 선정 공고를 하고 있으나,
 -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 결과 우선순위자를 자펀드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선정하지 않을 경우 공고를 다시 할 것인지 아니면 차순위자에게 선정 기회를 부여할 것인지를 정하지 않음
- 또한, 농금원은 「리스크관리지침」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이 규약을 위반한 경우 자펀드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자펀드 자산운용 위험관리(조기경보시스템)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의 규약위반 우려를 인지하더라도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알리고 우려를 해소하도록 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

- ① 투자심의위원회의 표결심의 부결로 업무집행조합원이 탈락한 경우 후속 조치 방안을 「농식품투자모태조합 투자관리지침」에 마련 요구 (개선)
- ② 자산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인지한 경우 이를 통보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리스크관리지침」에 마련 요구 (개선)

6	개인정보 보호지침 내용 부적정		
처분요구	개선	조치기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경영기획실)

-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지켜야 할 「개인정보 보호지침」은 상위규정인 「개인정보 보호법」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준용하여야 하나,
 -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상위규정에는 즉시 파기하도록 정해진 반면 농금원은 5일 이내에 파기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상위규정에 위배되게 운영함
 - 또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정한 상위규정과 달리 5일 이내에 알리도록 명시하는 등 상위규정과 맞지 않게 운영하고 있음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

개인정보 보호지침에서 정한 개인정보 파기, 유출 통보, 정정·삭제 등의 처리기한을 상위규정인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처리기한과 일치되도록 개정 요구 (개선)

7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및 괴롭힘 예방지침 부적정		
처분요구	개선	조치기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경영기획실)

- 농금원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을 각각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처리 절차 등을 명확히 정하는 등 상위규정에 맞게 동 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 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76조의3 등에서 정한 규정을 인용하고,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기관 규모 등 현실에 맞게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에서 각각 정하고 있는 고충상담직원을 통합 운영하는 등 인력관리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함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을 상위규정과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규정을 마련하도록 요구 (개선)

8	농업정책자금 융자금 검사 미흡		
처분요구	통보	조치기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정책자금관리실)

- 농금원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융자 및 이차보전과 관련된 농식품 사업자금의 검사 및 사후관리 지도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정수급 사유 등의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 농어촌공사와 유통공사가 직접 취급하여 융자한 자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사를 하지 않고 있음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

한국농어촌공사가 집행하는 농지관리기금,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가 집행하는 농안기금의 용자금 적정성 검사에 필요한 규정을 현행화하고 관련 규정에서 정한 검사를 시행하도록 요구 (통보)

9	농업정책자금에 대한 상시관리 시스템 구축		
처분요구	통보(모범사례)	조치기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정책자금관리실)

- 농금원 정책자금관리실은 농업정책자금의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부정수급 발생 시 조기에 정상화할 수 있도록 노력
 - 정책자금 대출한도 산정을 위한 소요경영비 심사 시 농업경영체등록 시스템(Agrix)의 농업정보가 대출심사시스템에 자동으로 수신되도록 함으로써 대출취급기관 담당자의 임의입력으로 인한 대출한도 과다 산출 문제점을 방지
 - 또한, 한국신용정보원의 사망자 정보를 연계한 '사망자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사망채무자 대출계좌에 대한 즉각적인 대출금 회수가 가능하게 하는 등 관리체계 강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

농업정책자금의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부정수급을 조기에 발견하여 정상화할 수 있도록 농업정책자금 상시관리 시스템 구축에 기여한 직원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 대상으로 선정하여 추천 (통보, 모범사례)